

工業發展法·施行令 및 施行規則

先進工業社會의 基盤구축을 위한 政府의 產業合理化계획은 市場原理에 立脚한 자율적인 競争체제 확립에 있다.

7월 1일부터 施行되고 있는 工業發展法은 지금까지 政府의 각종 規制를 철폐하여 民間自律競爭体制확립이라는 工業지원政策의 전환을 制度的으로 뒤받침하고 있다.

새로운 政策基調로 運用되고 있는 產業發展·育成의 基本法으로서 活用될 工業發展法·同施行令 및 施行規則을 全文 게재한다. <編輯者註>

工業發展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工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工業의合理化를 促進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適用範圍) 이 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業 및 이에 必須의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이하 “工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第3條(Industrial Development Policy의 基本方向) ① 工業의 발전은 個人의 創意를 바탕으로 自律과 競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政府는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工業技術 및 生產性의 향상
2. 資源의 效率적인 開發 및 이용
3. 人力의 養成 및 效率적인 管理
4. 工業自立基盤의 확충

③ 工業을 영위하는 事業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施策이 效率적으로 達成될 수 있도록 적극 協助하여야 한다.

第2章 工業合理化의 促進

第4條(合理化業種의 指定申請)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業種을 工業의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한 對象業種(이하 “合理化業種”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출것을 商工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第5條(合理化業種의 지정) ① 商工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당해 業種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合理化業種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한 事業者의 數가 당해 業種을 영위하는 全體 事業者의相當數에 達하거나 그 申請을 한 事業者의 經營規模 또는 生產規模가 당해 業種의 事業分野에 있어서 大部分을 占하여야 한다.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業種으로서 工業發展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國際競爭力의 확보가 緊要하다고 인정하고 事業者의 自主的인 노력만으로 그 확보가 效率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業種

가. 工業技術의 향상이나 設備의 개선등을

- 통하여 生產性을 현저히 增進할 수 있는 경우
- 나. 資源 및 에너지의 節約效果 또는 附加價值增大效果가 현저하 를 경우
 - 다. 生產 및 經營活動에 있어 事業者의 共通의인 隘路事項을 解決할 수 있는 경우
2. 產業構造의 變化 등 國内外 經濟與件의 變化로 事業者의 經營規模 · 生產規模 또는 生產方法의 부적당한 상태가 長期間 계속될 우려가 있는 業種으로서 그 상태를 克服하는 것이 工業發展과 國民經濟의 전진한 발전에 繫要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 本文後段의 요건이 충족된 申請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第1項第1号 또는 第2号의 業種을 영위하는 事業者가 自發的으로 第4條의 申請을 할 것으로 期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당해 業種을合理化業種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商工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合理化業種으로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利害當事者(團體를 포함한다)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④ 商工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合理化業種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第21條에 規定에 의한 工業發展審議會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審議를 거쳐야 한다.
- ⑤ 商工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合理化業種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第6條(合理化計劃의 수립)** ① 商工部長官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合理化業種을 지정한 때에는 第5條 第1項 第1号 또는 第2号의 구분에 따라 業種별로 工業의合理化를促進하기 위한 計劃(이하 “業種別合理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業種別合理化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第1項의 業種別合理化計劃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第5條第1項第1号에 해당되는 業種

- 가. 필요한 技術의 내용 및 開發促進에 관한 사항
- 나. 製品의 性能 또는 品質水準에 관한 사항
- 다. 生產規模의 적정화 또는 生產品目의 전문화에 관한 사항
- 라. 共同行爲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業種별로 工業의合理化를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第5條第1項第2号에 해당되는 業種
- 가. 施設 · 設備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나. 施設 · 設備의 新設 · 增設 또는 改造 · 改替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
- 다. 經營規模 · 生產規模 또는 生產方法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 라. 合併,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渡 · 譲受 등 事業提携에 관한 사항
- 마. 事業의 轉換에 관한 사항
- 바. 共同行爲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業種별로 工業의合理化를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業種別合理化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第4項의 規定을準用한다.
- ④ 政府는 第2項 第2号의合理化計劃을樹立 · 實施함에 있어 發生한 雇傭問題에 있어 發生한 雇傭問題에 대하여 必要한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 第7條(業種別合理化計劃의 실시)**合理化業種으로 지정된 業種을 영위하는 事業者 및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者(이하 “合理化事業者”라 한다)는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業種別合理化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그業種別合理化計劃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自主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第8條(勸告 · 調整등)** ① 商工部長官은合理化事業者의 自主的 노력만으로 당해 業種의業種別合理化計劃의 효율적인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合理化事業者에게 共同行爲등 業種別合理化計

則의 실시를促進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범위안에서 필요한勸告 또는調整을 할 수 있다.

1. 業種別合理化計劃에서 정하는合理화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一般消費者 및 關聯事業者的 이익을 부당하게 害할 우려가 없을 것.

3. 合理化事業者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調整에 따르지 아니하는合理化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期間 내에 그 勸告 또는調整에 따른措置를 할 것을命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措置命令에 따라措置를 이행한合理化事業者は商工部令이 정하는 사항을商工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商工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措置命令을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第4項의 規定을準用한다.

第9條(事業內容등의 登錄) ① 商工部長官은業種別合理化計劃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合理化業種 중에서事業內容 및施設·設備를登錄하여야 할業種을 지정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登錄을하여야 할業種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業種의合理化業者는商工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商工部에登錄하여야 한다.登錄한 사항을变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商工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

第10條(合理化事業에 대한 지원) ① 政府는業種別合理化計劃을 실시하는合理化事業者에 대하여金融·租稅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政府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第4項의 規定을準用한

第3章 工業技術 및 生產性의 향상

第11條(Industrial技術 및 生產性向上의獎勵) 商工部長官은事業者로 하여금工业技術 및 生產性의 향상을促進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事業을 실시하도록獎勵하여야 한다.

1. 企業의附設研究所의設置 및 운영
2. 技術開發促進法 第10條의 3의規定에의한 產業技術研究組合의設立 및 운영
3. 特定研究機關育成法의適用을 받는特定研究機關 및 第16條의規定에의한韓國生產性本部의 적극적인活用
4. 第13條의規定에의한工业基盤技術開發事業 및 第14條의規定에의한工业技術開發促進事業에의 적극적인참여
5. 研究開發投資의促進 및擴大
6. 外國先進技術의導入
7. 기타工业技術 및 生產性의 향상을促進하기 위하여필요한事業

第12條(Industrial基盤技術向上計劃의 수립 및 공고)

① 商工部長官은工业發展에 繫要한技術로서 다음各號에 해당하는技術分野의技術水準을효율적으로향상하기 위한計劃(이하“工业基盤技術向上計劃”이라한다)을수립하고 이를公告하여야 한다.工业基盤技術向上計劃을变更할 때에도또한같다.

1. 工業의共通的인隘路事項으로되어있는技術分野

2. 事業者の自主的인노력만으로技術向上을期待하고어렵다고인정되는技術分野

② 第1項의規定에의한工业基盤技術向上計劃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어야 한다

1. 工業技術의 향상을 위한技術開發 또는技術導入에관한사항
2. 技術人力의需給展望 및養成에관한사항
3. 工業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한教育 및技術指導에관한사항
4. 施設·設備 및工程의개선에관한사항

5. 기타 第1項 各号의 해당하는 技術分野의 技術水準을 효율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商工部長官이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第4項의 规定을準用한다.

第13條(工业基盤技术開發事業) ① 商工部長官은 工業基盤技术向上計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术處長官과 協議하여 다음 각号의 1에 該当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工業發展에 필요한 技術開發事業(이하 “工业基盤技术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國·公立研究機關

2. 特定研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定研究機關

3. 企業의 附設研究所 및 產業技術研究組合

4. 教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 各号의 1에 해당하는 機關이 工業基盤技术開發事業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工业技术開發促進事業) ① 商工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業技术의 향상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각号의 事業을 실시한다.

1. 技術水準의 評價

2. 技術 및 研究에 관한 情報의 流通

3. 試驗研究施設·設備의 利用斡旋

4. 事業者와 國内外學界·政府·外國政府·國際機構 및 外國의 技術關係機構와의 共同研究

5. 開發 및 應用된 新技術의 事業化促進事業

6. 技術向上을 위한 指導事業

7. 기타 事業者의 工業技术의 향상을 促進

하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事業을 실시함에 있어 人力 또는 施設·設備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3條 第1項各号의 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派遣勤務 또는 施設·設備의 活用을 요청할 수 있다.

第15條(新技术事業投資에 대한 施策講究) 政府는 新技術을 開發하거나 応用하여 이를 事業化하는 事業者 및 이에 出資를 주된 事業으로 하는 者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6條(韓國生產性本部) ① 工業의 生產性向上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生產性本部(이하 “生產性本部”라 한다)를 設立했다.

② 生產性本部는 法人으로 한다.

③ 生產性本部는 그 주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生產性本部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外의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⑤ 生產性本部는 生產性向上을 위하여 다음 각号의 事業을 실시한다.

1. 經營診斷 및 指導事業

2. 教育訓練事業

3. 調查研究事業

4. 技術開發 및 普及事業

5. 商工部長官이 生產性向上을 위하여 委託한 事業

6. 기타 生產性本部의 定款이 정하는 事業

⑥ 生產性本部는 第1項의 规定에 의한 目的達成에 필요한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収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⑦ 生產性本部가 아닌 者는 韓國生產性本部 또는 이와 유사한 名称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生產性本部에 관하여 이 法에 规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 规定을準用한다.

第4章 工業發展基金

第17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工業의 균형 있는 발전과 工業의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한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工業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18條(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각号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捐金 또는 融資金
 2. 事業者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 등의 出捐金
 3. 基金의 운용으로 생기는 収益金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収入金
- ② 政府는 第1項의 造成財源외에 國內에서 資金을 借入하거나 外國에서 借款을 얻어 그 資金을 基金에 貸與할 수 있다.

第19條(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商工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다만, 商工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로 하여금 基金을 運用·管理하게 할 수 있다.

- ② 基金의 運用·管理 및 區分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각号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1. 第6條 第1項에 規定에 의한 業種別合理化計劃의 실시를 위한 事業
2.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의 실시를 위한 事業
3. 第16條 第5項 第5号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이 生產性本部에 委託하여 행하는 事業
4. 기타 工業의 균형 있는 발전과 工業合理화의 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第5章 工業發展審議會 및 事業者團體 등

第21條(Industrial Development Review Board의 設置) 事業者 및 工業

에 관한 專門家의 知識을 최대한 活用하고 그 의견을 들어 工業發展을 위한合理的인 政策의 수립을 도모하고 이 法에 정한 사항을 審議하며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商工部에 工業發展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22條(組織 및 운영) 審議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事業者團體) ①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業種別로 당해 業種의 事業者團體(이하 “事業者團體”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② 事業者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 ③ 事業者團體의 定款記載事項과 운영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 事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 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4條(事業) 事業者團體는 당해 業種의 발전을 위하여 業種別로 다음 각号의 事業을 실시한다.

1. 發展方向에 관한 調查·研究事業
2. 利益增進을 위한 事業
3. 業種別合理化計劃의 추진을 위한 事業
4. 生產性向上등 國際競爭力 향상을 위한 事業
5. 商工部長官이 당해 業種의 발전을 위하여 委託한 事業
6. 기타 事業者團體의 定款이 정하는 事業

第25條(共濟事業團體) ①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共濟事業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1. 機械類의 品質保障과 瑕疵保證을 目的으로 하는 機械共濟事業團體
2. 建造중 또는 建造후 引渡전의 船舶이 事故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경우 그 損

失에 대한 補償을 目的으로 하는 造船共濟
② 共濟事業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③ 共濟事業團體의 定款記載事項과 운영 및
監督등에 관하여 諸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
로 정한다.
④ 共濟事業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
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
을 準用한다.

第6章 補 則

第26條(共同行爲等에 대한 特例) ① 第6條 第
1項의 業種別合理化計劃에 의하여 실시하
는 合併,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渡
· 讓受 등의 事業提携 및 共同行爲에 대하여
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을 適
用하지 아니한다.
② 商工部長官은 合併, 營業의 전부 또는 主
要部分의 讓渡 · 讓受 등의 事業提携 및 共同行
爲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業種別合理化計劃
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經濟企劃
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27條(資料提出)|商工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合理化事業者, 生產
性本部 및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그 事務에 관
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28條(權限의 委任 · 委託) 이 法에 의한 商工
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業振興廳長, 서울特別市長·直轄
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生產性本
部, 中小企業振興公團, 事業者團體 또는 大統
領令이 定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
다.

第7章 罰 則

第29條(罰則) ①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②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

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
다.
③ 第1項의 罪는 商工部長官의 告發이 있어
야 論한다.

第30條(兩罰規定) 法人的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 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
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1條(過怠料) ①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資料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
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6條 第7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
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이
賦課 · 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
이 있는 者는 30일이내에 商工部長官에게 異
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
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
한 때에는 商工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
裁判을 한다.
⑥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
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
收한다.

第3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商
工部長官이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生產性本部, 中小企業 振興
公團, 事業者團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
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
으로 본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① 다음 각号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機械工業振興法
2. 造船工業振興法
3. 電子工業振興法
4. 鐵鋼工業育成法
5. 非鐵金屬製鍊事業法
6. 石油化學育成法
7.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

②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非鐵金屬 製鍊事業法 第2條·第3條·第8條·第9條 및 第17條의 规定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③ 이 法 施行전의 第1項 各号의 廢止되는 法律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规定에 의한다.

第3條(韓國生產性本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의 財團法人 韓國生產性本部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生產性本部로 본다.

第4條(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機械工業振興法에 의하여 造成된 機械工業振興基金, 종전의 電子工業振興法에 의하여 造成된 電子工業振興基金은 이 法 第17條의 规定에 의한 基金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造成된 纖維工業近代化基金 중 商工部長官이 인정한 政府의 出捐金은 이 法 第17條의 规定에 의한 基金으로 보며, 그 殘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纖維產業聯合會가 이를 운용·管理한다.

③ 이 法 施行 당시의 韓國造船工業協同組合 및 社團法人 韓國造船工業協會는 第25條 第1項 第2号의 规定에 의한 造船共濟事業團体로 보며, 종전의 造船工業振興法 第6條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造成된 基金을 운용·管理한다.

第5條(事業者團體에 관한 經過措置) ① 종전의 機械工業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機械工業振興會, 종전의 電子工業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子工業振興會, 종전의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纖維產業聯合會는 각각 이 法 第23條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設立된 事業者團體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第23條 第1項의 事業者團體와 유사한 目的으로 民法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이 第23條 第1項의 事業者團體가 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組織을 變更하여 第23條 第1項의 事業者團體가 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社團法人은 이 法에 맞추어 定款을 變更하고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地方稅法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鐵鋼工業育成法 第4條의 规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鐵鋼工業者, 종전의 石油化學工業育成法 第8條의 规定에 의하여 團地를 造成·管理·운영하기 위하여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支援事業者에 대하여 地方稅法 第110條의 第3項, 第128條의 2 第3項, 第184條의 第3項의 规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第1号 내지 第5号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 分解工業
2. 銑鐵·特殊鋼 또는 轉爐에 의하여 鐵鋼을 製造하는 鐵鋼工業
3. 機械工業
4. 電子工業
5. 造船工業

第8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附則 第2條에서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规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规定이 있는 때에는 그 廢止되는 规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施 行 令

제 1 조(목적) 이 令은 공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업의 범위) 법 제 2 조의 공업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괄호안은 표준사업분류 번호)

- ① 설탕제조업(3118)
- ② 섬유 의복 및 가죽제조업(32)
- ③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포함)(33)
- ④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34)
- ⑤ 화학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35)
- ⑥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36)
- ⑦ 제 1 차 금속산업(37)
- ⑧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38)
- ⑨ 기타제조업(39)
- ⑩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84311)

제 3 조(합리화 업종의 지정신청) ①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업종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업종 지정신청을 할 때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대해서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의한 협동조합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심의회) 법 제 5 조 제 4 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제 5 조(기간의 범위) 법 제 8 조 제 2 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3년 내의 기간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 6 조(등록의 실시) 법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등록업종을 지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실시) ① 법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상공부장관이 법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관 중 해당 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주관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협약에는 개발사업의 과제, 개발사업책임자, 출연금의 지급, 개발성과의 활용 및 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제 1 항의 기술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개발과제의 선정등) ① 개발사업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은 공업기술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개발과제의 선정 심사, 개발성과의 평가 등 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내에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업기술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 9 조(출연금의 지급사용 관리 등)

① 법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발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출연금을 당해 개발

사업에 지급된 비용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비용을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교육훈련비 시설기자재 및 재료사용비 기술도입비 지도지도비 및 기타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술개발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실적을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 월 말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술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신제품생산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상공부장관과의 기술개발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기술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징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 수행자의 개발능률제고, 개발자금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되고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 월 말까지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업기술개발촉진사업추진 협의기구)

① 상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공업기술개발 촉진사업(이하「촉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업기술개발 촉진사업 추진협의 기구(이하「협의기구」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 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

4. 국공립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금융기관

6. 정부투자기관

7.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산업연구원

8.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9.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② 상공부장관은 협의기구 구성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각 기관간의 합리적인 업무협조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연도별 촉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인력시설 정보의 제공, 소관분야 업무의 분담수행 등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구의 사무국은 상공부에 둔다.

④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업자의 촉진사업 실시요청) 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촉진사업의 실시를 상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공부장관은 협의기구를 통하여 최대한의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촉진사업비용) 상공부장관은 촉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실시 요청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촉진사업협조) ① 상공부장관은 촉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 및 연구기관 등 정부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의 실시) 생산성본부가 법 제16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이에 부대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상공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관리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재원별 자금사용계획.
3.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의 설명내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공부장관은 사업자에게 기금을 응자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상공부장관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할 금융기관과 실수요자에 대한 응자금리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공부장관은 기금의 응자조건 응자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 운용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상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이를 감사원,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기금을 응자 받

은자(이하「기금사용자」라 한다)는 그 응자 받은 기금(이하「응자기금」이라 한다.)을 응자받을 때의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기금사용자가 그 응자기금을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응자를 취소하고 응자기금을 즉시 회수하게 하거나 응자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진도 보고 등) ① 기금사용자는 매반기 말일 현재의 사업진도의 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달 말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 기금의 응자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달 말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 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충돌사항과 기금지출원인 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보유자금 운용관리) ① 법 부칙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운용 관리하는 자금(이하「운용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노후시설 개체보완에 관한 사업.
2. 섬유제품의 고급화 사업.
3. 섬유기술개발 및 기능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4. 섬유류, 수출진흥 및 통상에 관한 사업.
5. 섬유정보의 수집,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의 운용관리.

② 한국 섬유산업연합회는 운용자금의 연간 운용관리계획을 수립, 매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2 항의 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자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 운용자금 사용계획 및 내역.

④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매분기 말 현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매회계연도 말 현재의 운영자금 집행실적을 매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의하여 최대한 증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공업발전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발전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하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위원범위외에 추가로 당해 심의안건과 관련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다음의 직을 가진자는 당연히 심의회의 위원이 된다.

1.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2.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3. 무역협회 부회장
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부회장
5.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6. 산업연구원 원장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사무국의 설치) ① 심의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상공부장관이 위촉하는 기관이 된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청 및 청문) ① 심의회는 정책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 또는 청문은 함께 있어서는 그 공청 또는 청문일 5일 전까지 공청회 참가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일시 장소 및 안전의 주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자는 공청회 심의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 3 항에 의하여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여 안전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제 3 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자가 심의안전과 관련이 없는 전문가인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단체의 설립허가) ① 법 제23조에 의하여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상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사업자 단체의 정관기재 사항 등) ① 법 제2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사원자격의 특실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사업자 단체의 보고사항)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 세출의 예산과 결산
3. 총회 및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4. 주요업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1조(공제사업단체의 설립허가) ① 법 제25조에 의하여 공제사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상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공제사업단체의 정관기재 사항 등) ① 법 제25조에 의하여 공제사업단체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사원자격의 특실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공제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공제사업단체는 매 회계연도 3월 말까지 공제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제사업단체는 공제사업의 운영과 기금의 조성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사업단체가 기금을 공제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요구의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취급하는 관련자는 그 자료상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 제 1 항·제 3 호 및 제6호의 사업.

② 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업무.

③ 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 제 1 항 제 5 호의 사업.

④ 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 제 1 항 제 2 호의 사업.

⑤ 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 9 호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업무.

(6) 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업무.

제35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상공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액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6조(공무원 의제) 법 제33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인」이라 함은 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습은 공업발전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업자 단체로의 변경기간) 법 부칙 제 5 조 제 2 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법의 시행 후 3 개월을 말한다.

施行規則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공업발전(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말한다.

제 2 조(합리화 업종지정 신청서류) 令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합리화 업종지정 신청서(별지 제 1 호 서식)
2. 회사의 연혁서.

3. 생산시설 및 생산판매현황

4. 생산제품의 국제경쟁력 현황(가격 기술판매)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법 제 6 조 제 2 항의 내용이 포함된 합리화 계획.

제 3 조(조치명령이행 상황보고) 법 제 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관한 이행보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리화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조치이행 시기 및 내용
3. 조치불이행시 그 사유.

제 4 조(등록의 실시) ① 법 제 9 조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합리화 사업자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주소.
2. 생산시설현황 및 계획.
3. 주요 제품생산 판매현황 및 계획.
4. 향후 사업추진 계획.

② 등록기관의 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합리화업종 등록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 3 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합리화사업자는 등록증의 등록사항 변동이 있거나 그 사업을 폐업 휴지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등록을 한 합리화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의 등록신청과 제 3 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제 1 항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을 매분기종료 후 익월 20일 까지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